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2. 4.(수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-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윤주현

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11호

○ 제 출 자 : 금산군수

○ 제 출 일 : 2026. 1. 23.

○ 회 부 일 : 2026. 1. 23.

2. 제안이유

○ 행정안전부의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금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6항)

- (기존) 금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: 100만원
- (개정)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5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

○ 기　　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1496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1180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50011)
- 입법예고(2025. 12. 10. ~ 2025. 12. 30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금산사랑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정했으나,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한도내에서 금산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현 조례에서는 금산사랑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, 이미 금산군에서는 2025년 6월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2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어, 앞으로 관계 법령 등에 맞춰 조례 개정 후 추진해야 할 것임.